

사회교육시설 등의 용도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이미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감면하여 준 등록세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현재 시세감면을 26.6%로 시행하여 온 쪼차형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을 91년 1월 1일부터는 폐지하되, 97년은 시세감면을 13.3%로 축소 감면 조정하였으며,

넷째,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여 기존주택의 승계취득은 시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 사용된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재래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시행자와 5년 이상 재래시장 임대입점 사업자의 재래시장 재건축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재개발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부동산 매매의 경우 검인계약서 사용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의 시세감면율을 20/100에서 10/100으로 축소하였으며,

일곱째,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中 각 조문에 단서로 규정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경감 받은 후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 신고납부 또는 추징하도록 조례 조문을 신설 하였습니다.

이번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 개정으로 지방세 세금면제혜택은 장애인은 약 3억원, 서울特別市 시장 458개 중 202개소의 재래시장은 약 39억원이 경감이 되고, 검인계약서 사용으로 약 350억원이 증세가 되겠습니다.

서울特別市에 등록된 6만 4,480대의 쪼차형 자동차세는 약 62억원이 징수되어 총 370억원의 세금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중요한 세목으로서 취득세는 97년에 서울特別市 일반회계 예산액 5조 8,900억원 중의 13%인 7,871억 7,400만원 규모가 되고, 등록세는 97년 예산 일반회계의 21%인 1조 2,158억원 수준으로 취득세는 96년보다는 7.5%, 등록세는 약 30% 증가될 추세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議員 여러분, 우리 財務經濟委員會에서 예비심사 의결한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

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이 원안가결되도록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特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特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2,538명”을 “2,554명”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5,348명”을 “5,733명”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제1호 및 동조제3호 증원정원중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에관한법을시행령 부칙 제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부칙 제2항 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정원 339명에 대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特別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特別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승용자동차”를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하고 “자동차세를”을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로 한다.

제7조중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